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51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유공자 적용 영구 배제	2
2. 법 소급적용 관련	11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4. 6. 12.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없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1.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유공자법 적용 영구 배제

현행	개정안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2호(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외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정 기간 경과 후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도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
 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
 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8조(품위손상행위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2) **「국가유공자법」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
 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 지난 경우

2. 삭제 <2009. 2. 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이에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³⁾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 특히, 안 제79조제3항 단서에 안 제79조제1항제6호를 추가하여
늑우침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회복을 금지함으로써 영구히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법」 상 적용 배제 대상⁴⁾ >

구 분	대상 행위(범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시 (제1호, 제2호)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 (제3호, 제4호)	살인의 죄,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의 상습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사기·공갈·장물의 상습범, 강도의 죄 등
	개정 전 「폭력행위처벌법」상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강 요,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상습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약취·유인죄, 상습 강도· 절도죄 등 및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가중처벌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 등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불법 탐지·수집·누설·거래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기타 (제5호)	공무원 등의 뇌물죄, 횡령·배임, 알선수재 등
	①상습적으로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상습적으로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3) [참고1]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현황(13p) 참조.

4) 각 죄의 미수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 죄만 적시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2](15p) 참조.

- 현행법이 특정 범죄행위 등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반국가적 · 반사회적 · 반인륜적 죄를 범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등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민적 존경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임.
- 동 조항의 취지와 친일반민족행위에 내포한 반국가성, 도덕적 비난 가능성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동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는 보상금 등의 지원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제한 사유를 신설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의 입법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존 배제 사유와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인지 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개정안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동 법의 적용 배제 사유로 「국가보안법」, 「형법」상 내란 · 외환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부터, 살인의 죄 · 강간 · 추행 등의 성폭력범죄, 사기 · 공갈 등의 재산 범죄와 같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반사회적 · 반인륜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범죄까지 규정하고 있음.
- 특히, 현행법은 공무원 등의 뇌물 관련 범죄 등과 상습적으로 품위

손상행위를 한 사람⁵⁾도 법 적용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평가의 경중뿐만 아니라 도덕적 흠결이 있는 자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이처럼, 기존 배제 사유가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 평가까지 고려하여 규정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배제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법 적용에서 영구히 배제하려는 것인바, 현행법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영구히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⁶⁾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범죄의 죄질과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평가 등을 비교하여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독립유공자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동 법의 영구적 적용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음.⁷⁾

5) 시행령은 품위손상행위를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6)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7) 「**독립유공자법**」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누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재등록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

□ 또한, 동 조항의 기존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은 동 법의 적용 배제 사유를 사회적 여건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법」상 적용 배제 사유 관련 개정 경과⁸⁾ >

개정 시기	추가 대상	개정 취지
2006.3.3.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제2호)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와 개념적 양립 어려움
2011.9.15.	공무원 등의 뇌물죄, 횡령·배임죄, 알선수재죄 등(제4호)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 ⁹⁾
2016.1.6.	「형법」상 상해·폭행 등의 상습범(제3호 가목)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죄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삭제 및 「형법」상 상습범 추가
2017.10.31.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불법탐지·수집·누설·가래 등(제3호 사목)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

□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 차원의 예우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친일행적과 별개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그 공적과 과오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국가에 대한 공헌 및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음.¹⁰⁾¹¹⁾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8) 그 밖에, 「청소년 성보호법」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의 가중처벌 법률이라는 이유로(2011. 9. 15.),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 위반죄가 「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2021. 6. 8.) 적용 배제 사유가 추가되었음.

9)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동 사유 추가(2011. 6. 24.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부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

□ 따라서 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동 조항의 취지·목적, 현행법상 제한 사유와의 균형성 및 기존 개정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가유공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국립묘지 안장자 중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자는 12명으로, 그 중 8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¹²⁾되어 있음.

<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가유공자 현황 >

(2024. 7. 기준, 단위: 명)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인원	생존자	사망자			
		소계	국립묘지 안장자		확인불가
			국가유공자	기타사유	
1,006	0	1,006	8	4	994

※ 사망자 중 994명은 정확한 인적사항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파악 곤란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광복 이전에 친일반민족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운동과 배치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독립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광복 이후 6·25전쟁 등 국가 수호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친일행위와는 별개로 그 공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대상자의

10) 제349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7. 2. 23.).

11)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서훈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후 그 공적에 반하는 다른 행적이 밝혀져 서훈을 취소한 처분을 다룬 사건에서, 법원은 그러한 행적과 기존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상훈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음(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7888 판결).

12) 8명 중 2명은 전몰군경, 7명은 무공수훈자임(1명은 전몰군경이자 무공수훈자).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동 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13)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은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는 문언상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는 ‘이미 「고엽제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거나 혹은 등록대상인 자’를 의미한다는 견해14)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 13) 「고엽제법」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14)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21524 판결(대법원 2012두1501 판결에 의하여 2012. 7. 26. 확정), “고엽제법 관련 규정을 모아 보면,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람은 그 규정의 문언상, '고엽제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각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고엽제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자 등으로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이미 고엽제법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공헌이 있기 전 발생한 사유를 동조항의 적용 배제 사유로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법 소급적용 관련

- 개정안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부칙을 두고 있음.

개 정 안
부 칙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개정안에 따른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이 법 시행 전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함.
-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거나 혹은 등록대상인 자'를 말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월남전 참전 등으로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질병을 얻은 자가 이후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실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됨.

-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¹⁵⁾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에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임.

- 결국, 개정안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라는 법적 지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유족의 신뢰보호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법적 규율은 행위시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역사적 배경 및 특수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의 법적 권리를 사후 개정을 통해 박탈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므로, 당사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5) 헌법재판소 2011. 3. 31. 2008헌바141 결정.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 친일반민족행위자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설치근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3. 3. 22. 공포)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2005. 5. 31. 설립
- 활동기간 : 2005. 5. 31. ~ 2009. 11. 30.(4년 6월)
- 업무내용
 -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 조사활동을 통해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 일제강점기를 구분하여 조사
 - 1기 : 1904년 러·일전쟁 ~ 1919년 3·1운동
 - * 이완용 등 106명 공개(2006. 12. 6.)
 - 2기 : 1919년 3·1운동 ~ 1937년 중·일전쟁
 - * 민영휘, 송병준 등 195명 공개(2007. 12. 6.)
 - 3기 : 1937년 중·일전쟁 ~ 1945년 해방
 - * 김성수, 방응모, 김활란, 백선엽 등 704명 공개(2009. 11. 27.)

□ 국립묘지 안장 친일반민족행위자 현황

구분		성명	안장자격	안장장소
국가유공자	1	김O준	전몰군경	서울위패
	2	김O일	무공, 장성급	서울
	3	김O범	무공, 장성급	대전
	4	송O하	무공, 장성급	대전
	5	신O균	무공, 장성급	서울
	6	신O영	무공, 장성급	서울
	7	신O준	무공, 장성급	대전
	8	백O엽	무공, 장성급	대전
기타	9	백O석	장성급 장교	대전
	10	이O준	장성급 장교	서울
	11	이O찬	장성급 장교	서울
	12	백O준	국가사회공헌자	서울

참고2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 유형

구분	대상 범죄(행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가보안법(제1호)	
		법 위반 행위
	「형법」(제2호)	
	제87조	내란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제89조	제87조·제88조의 미수범
	제90조	제87조·제88조의 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2조	외환유치
	제93조	여적
	제94조	모병여적
	제95조	시설제공이적
	제96조	시설과괴이적
	제97조	물건제공이적
	제98조	간첩
	제99조	일반이적
	제100조	제92조~제99조의 미수범
	제101조	제92조~제99조의 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된 사람	「형법」(제3호 가목)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	제250조·제252조·제253조의 미수범
	제264조	상습 상해·폭행 등
	제279조	상습체포·감금 등, 각 죄의 미수범
	제285조	상습 협박 및 미수범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	인신매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제294조	제287조~제292조의 미수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구분	대상 범죄(행위)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된 사람	제300조	제297조~제299조의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제332조	상습으로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를 범한자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1조	상습 강도 등
	제342조	제333조·제339조, 제341조의 미수범
	제351조	상습 사기·특수공갈
	제363조	상습 장물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호 나목)	
	제2조	상습 상해·폭행·협박·강요주거침입·공갈·재물손괴 등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제6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의 미수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다목)	
	제5조	국고 등 손실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호 라목)	
	제3조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죄 등의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호 마목)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5조	제3조~제9조의 미수범

구분	대상 범죄(행위)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호 바목)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군사기밀보호법」 (제3호 사목)
	제11조 군사기밀 탐지·수집
	제11조의2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제12조 군사기밀 누설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13조의2 군사기밀 불법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5조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제3호 아목)
	제95조의2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위한 필요조치, 기술적·관리조치 등 의무 위반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재직기간 중 직무관련 뇌물 등 범죄(제4호)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제133조 뇌물공여 등
	제355조 횡령,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 배임수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 알선수재
기타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제5호 및 시행령 제98조)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 하는 행위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